

# 서울특별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 안 경 위

가. 발 의 자 : 김 경 의원 외 14명

나. 의안번호 : 제2811호

다. 발의일자 : 2025년 5월 26일

라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
### 2. 제 안 이 유

- 2016년 「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이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체계에 포함되었으나 여전히 지원 체계가 미흡하고 일부 동물원·수족관의 보유 생물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.
- 이에 서울시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 관리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 위임사항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# 3. 주 요 내 용

- 가.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(안 제4조)
- 나. 서울특별시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(안 제5조~제9조)
- 다. 시장이 관할구역 내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
- 라. 서울시 및 산하 기관에서 설립한 동물원 및 수족관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1조)

## 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## 5. 검토 의견

### 가. 개요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위임사항과 동물원·수족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「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은 동물원과 수족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2016년 제정 후 시행<sup>1)</sup>하고 있고 동 법에 적용되는 서울시(이하 “시”) 관내 대상 시설은 7개소<sup>2)</sup>로 이 중 시 소유는 1개소 (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), 민간 소유는 6개소로 파악되고 있음.
-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제3조<sup>3)</sup>에 따른 관련 시책 수립과 제5조에 따른 시도별 관리계획(5년 주기)의 수립 등이 있으며,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1년 제1차 ‘동물원·수족관 관리 종합계획’<sup>4)</sup>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원·수족관 보유동물을 적절 하게 보호·관리하기 위해 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종합계획의 수립과 동물원·

1) [시행 2017. 5. 30.] [법률 제14227호, 2016. 5. 29., 제정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·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며,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,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) 서울시 관내 현황: 동물원 5개소, 수족관 2개소

| 연번 | 구분  | 상호             | 소재지  | 운영 | 등록일        |
|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|------------|
| 1  | 동물원 | 서울어린이대공원       | 광진구  | 공영 | 2018.05.30 |
| 2  | 동물원 | 헬로애니멀          | 도봉구  | 민간 | 2018.09.07 |
| 3  | 동물원 | (주)주령주령 타임스퀘어점 | 영등포구 | 민간 | 2019.07.17 |
| 4  | 동물원 | 주식회사 테이블에이     | 마포구  | 민간 | 2021.10.27 |
| 5  | 동물원 | 쥬라리움 금천점       | 금천구  | 민간 | 2023.03.14 |
| 6  | 수족관 |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    | 송파구  | 민간 | 2018.05.30 |
| 7  | 수족관 | 코엑스아쿠아리움       | 강남구  | 민간 | 2018.05.31 |

3) 제3조(국가 등의 기본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적정 전시문화 조성을 통한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국민의 생물다양성 보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확보와 안전하고 건강한 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4) (2021년~2025년) 서울시 제1차 동물원·수족관 관리 종합계획, 동물보호과-8943호(2021.4.7.)

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 구성·운영, 재정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, 조례 체계상 무리 없이 구성된 것으로 판단됨.

다만, 안 제1조(목적)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나, 아직까지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위원회 구성·운영 사항을 제외하고는 없는 상황이며, 이 또한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써 다른 시·도에서도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.

-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명시한 ‘동물원·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’은 현행 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」(이하 “동물보호 조례”) 제1조 목적<sup>5)</sup>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‘시민의 생물다양성 보전 의식’은 「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<sup>6)</sup> 및 「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<sup>7)</sup>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.

따라서 현재의 정책 및 제도로도 목적을 달성하고 있고 본 조례안에 위원회 설치·구성 이외에 새롭게 규정하는 사항이 많지 않아 별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.

- 위원회(안 제5조~제9조)는 법 제7조제2항<sup>8)</sup>에 따라 ‘시·도별계획(5년 주기) 수립·

---

5)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동물보호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「**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**」에 따른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6) 제3조(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) ① (생 략)

② **생물다양성 보전**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.

제4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~ ③ (생 략)

④ 시장은 시민(법인·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자연환경보전과 **생물다양성 보전**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(생 략)

제5조(시민 협력) ① (생 략)

② 시민은 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과 **생물다양성 보전**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
7)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·관리하고 **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**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8) 제7조(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) ②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시·도별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
2. 그 밖에 관할구역 내 보유동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

시행에 관한 사항' 등을 자문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나, 관련한 서울시 업무는 '허가 및 관리'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동안 별도 지속 사업 없이 "동물보호 문화확산" 사업 내 자문수당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, 최근 5년간 개최 횟수는 8회에 그치고 있어<sup>9)</sup>, 위원회 설치 실효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.

특히, 해양생물 등 수족관 분야 전문 기관(대학 및 연구소 등)<sup>10)</sup>과 '수산생물 질병' 관련 기관<sup>11)</sup>이 서울시에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동물원과 수족관을 총괄하는 위원회 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, 이로 인해 '동물원 전문가'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현 '동물복지위원회'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- 또한, 「동물보호법」 제7조제1항<sup>12)</sup>제3호에 따라 국가 '동물복지위원회'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동물보호·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,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 하나의 위원회로 연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, 별도 위원회 구성없이 현행 '동물복지위원회'<sup>13)</sup>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.

9) 2025년 “동물보호 문화확산” 예산 2억 7천8백만원 중, 동물원·수족관 전문가 자문수당(5백만원 편성) 회의개최(최근 5년): '25년(0회), '24년(0회), '23년(2회, 80만원), '22년(2회, 80만원), '21년(4회, 210만원)

10) 국립한국해양대학교(부산시), 목포해양대학교(목포시), 제주대 해양생명과학(제주시), 부경대 해양대학(부산시), 전남대 여수캠퍼스 해양생물학(여수시) 등

11) 수산생물 질병관련 대학: 부경대(부산시), 제주대(제주시), 목포대(목포시), 군산대(군산시), 강릉원주대(강릉시), 경상국립대(진주시), 공주대(공주시), 전남대 여수캠퍼스(여수시), 한서대(서산시), 선문대(아산시) 등

12) 제7조(동물복지위원회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제1호는 심의사항으로 한다.

1.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2. 동물복지정책의 수립, 집행, 조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

**3.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동물의 보호·복지와 관련된 사항**

4. 그 밖에 동물의 보호·복지에 관한 사항

13) 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」 제5조(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물복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
2.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

3. 동물의 학대방지,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

4. 동물보호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

5.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